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위 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 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서예진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0329호

시행일자 2021. 04. 12.

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

참 조

제 목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안 안내

- 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3호(2021.04.09.)
- 2. 위와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- 가. 개정이유
-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
- 나. 주요내용
 -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(80%),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선 별급여(50%) 목록 신설

다. 시행일: 2021.5.1.부터

붙임: 보건복지부 고시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